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86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5.  
행정안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: 2025. 9. 30. 김진경 의원 등 7인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(2025. 10. 15.)  
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김진경 의원)

기존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(대금e바로)이 현재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(하도급지킴이)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, 현행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)

나. 기존 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삭제하고, 현행 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

항을 규정함(안 제2조제6호, 제9조 삭제, 안 제8조제3항 신설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#### 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상민)

가. 조문 내용별 검토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서 2019년 11월<sup>1)</sup>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“건설업자” 용어를 “건설사업자”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만큼, 조례 시행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규범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,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, 법적 공백이나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됨.
- 안 제8조제3항은 늦게나마 조달청 ‘하도급지킴이’ 시스템을 도입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, 해당 시스템은 2021년부터 이미 적용 중이며, 관련 법령 개정 후 용어 정비도 뒤늦게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담당부서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임.

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2019.04.30 [법률 제16415호, 시행 2019.11.1.]

## 나. 종합의견

-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·재하청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으나,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및 대금 미지급 문제가 빈발하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와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필요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.
- 서울시는 2011년 「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(대금e바로)」을 도입하였으나, 자치구 차원까지 확대되지 않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「대금e바로 활성화 종합대책」 수립을 통해 자치구 조례 제·개정을 유도, 의무사용을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함.
- 강남구는 2016년 12월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해 왔으나, 2019년 11월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 이후, 2021년부터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, 6개 도로사업소를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(「하도급지킴이」)으로 전환·운영되고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통일 시스템인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제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, 실제 운영은 이미 202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, 법령 개정 후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용어 정비와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은 행정의 적시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향후 소관부서의 신속한 제도 반영 및 대응 필요함.

##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□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

#### 제9조의2(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)

-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·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(이하 "전자조달시스템등"이라 한다)을 활용하여야 한다. [개정 2019.11.26] [[시행일 2020.5.27]]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·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·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[신설 2019.11.26] [[시행일 2020.5.27]]
-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. 끝.